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이정기* · 한영희**

A Study on the Tax Policy of Electronic Commerce

< 목 차 >

I. 서론	V. 결론
II. 전자상거래의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III.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상 쟁점	ABSTRACT
IV.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상 방안	

I. 서론

오늘날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Cyberspace)¹⁾이 병존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현재와 미래를 가상공간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 상용화는 상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 및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폐쇄형의 통신망(Closed Proprietary Networks)에 의한 상인간 활동과 주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개방형의 통신망(Opened Networks)에 의한 활동이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상호 병합·상승하는 가운데 당해 활동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²⁾

*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세무학전공 조교수

**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세무학전공 전임강사

1) ① 가상공간(Cyberspace)이라는 용어는 William Gibson의 소설 「Neuromancer(Ace Science Fiction Books, 1984)」에서 언급된 바를 그 효시로 보고 있으나 John P. Barlow의 「Online Gathering Place」에서 「전세계적 전자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를 계승하여 Tim B. Lee는 「전세계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의 생성」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가상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See, www.w3.org/People/Berners-Le/ShortHistory.html).

② Roy J. Girasa, CYBERLAW: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rentice Hall, 2002, p.15.

2)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Ch.1.6(The Internet Revolution), 1997.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유통단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생산물의 교환장소가 특정의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유형·무형재화의 거래형태가 크게 변화되어 왔다.

전자상거래를 컴퓨터의 통신망에 의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라고 한다. 전자상거래는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협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시각(문자, 영상) 혹은 청각(소리) 등의 자료를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나아가 광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컴퓨터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팩스(FAX), 전자우편(E-Mail), 전자문서교환(EDI) 그리고 전자자금이체(EFT)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로 정의하기도 한다.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인해 재화의 비정형화와 각 국을 넘나드는 재화의 이동에 따른 조세문제가 기존의 조세개념을 흔들 수 있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는 상거래 패러다임(Paradigms)의 개편으로 인해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업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관심을 두어 조세정책에 따른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를 토대로 조세정책 대안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검토하여 조세정책의 쟁점을 분석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향후 제도정비 및 조세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의 이론적 고찰

전자상거래 과세를 둘러싼 이해관계 및 역학구도를 기반으로 그 동안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었거나 합의된 사항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내국세관련 논의

(1) OECD

전자상거래의 기반기술과 진행상황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논의를 OECD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가장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는 1997년 이후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와 산하 작업반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재정위 산하의 작업그룹인 ECTA(Electronic Commerce Tax Administration Action)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보고서를 '98년 10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전자상거래 과세기준(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승인·공표 하였다. 또한 동 문건은 오타와 각료회의 이후 논의할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이슈들을 열거하고 있다.³⁾

오타와 각료회의 합의사항은 첫째,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술을 활용할 것, 둘째, OECD회원국, 기업 및 비기업 납세자단체 등과의 협조를 강화 할 것,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중립·효율·간소·효과 및 공평성 등 일반적 과세원칙을 유지할 것 등이다.

일반적 과세원칙은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거래에 비해 과세상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 과세원칙 실현은 현행 과세기준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과세주권, 과세베이스의 국가간 공평배분 보장, 이중과세 및 무과세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WTO

WTO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1998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98년 5월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 선언"을 채택하여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잠정적 합의하였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안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제시하고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협상을 통해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2000년까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협정과 내국세부과금지 협정을 맺

3) 과세프레임웍 요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 필요 ② 조세행정, 납세자파악 및 필요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납세자 관행문제 그리고 전자서명에 의한 납세자 파악허용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개발논의 ③ 징세 및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진납세를 포함해서 납세협력 유도전략 개발 ④ 소비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소비자 개념, 공급장소 규정 및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달을 과제로 채택 ⑤ 국제조세조치 및 협력에서는 고정사업장 및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 원천소득의 분류문제, 이전가격지침 등의 명확화와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조세협정의 활용증진 방안 및 유해조세경쟁 방지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

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내에 주요 안전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2년 내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려는 실행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통신인프라와 정보기술, 각종 관련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점은 무관세에 의한 자유교역, 내용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철폐,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현안 해결방안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3) APEC

'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으며, '97년의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APEC 전자상거래 청사진에서는 APEC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정리하고 활동비전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였다.

민간은 기술, 서비스 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법제도적 환경 마련, 신뢰증진, 국제 협력, 선도적 역할 등을 담당해야 한다.

서범적인 작업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사례연구 확대, 전자상거래 특정 지표 개발, 금융적 측면의 작업, 경제기술협력 강화, 전자인증 실행 등이 포함된다. 가상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지원 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개발 전략, 인력자원 개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정보 교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실현을 위해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0년까지 실행 되도록 진행해야 하며, 컴퓨터 200년 인식문제에 대응을 위해 '99년 상반기 중 '지역 긴급 계획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APEC에서는 향후 전자상거래 청사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가상운영그룹(virtual steer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조세와 관세에 대한 작업결과를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권고하기로 했다.

(4) UNCITRAL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작업반을 구성하여 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서 관련 입법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동위원회에서는 '92년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자금 이체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였으며, '96년 전자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 제거를 기본 목적으로 한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였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각국 법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법은 모두 2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전자상거래 일반(Electronic commerce in general)', 제2부는 '특정 영역에서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in specific areas)'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모델법의 형식을 취하여 각국이 국내 입법을 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내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는 전통적 국경개념을 전제로 한 법 이론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힘든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97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자서명, 인증기관, 인증서 등에 대한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 중이다.

2. 관세관련 논의

관세분야의 논의는 주로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WTO에서는 '98.5 제2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99.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각료 회의시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재화를 전송 받는 온라인(On-line)거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다른 분야도 관세율을 낮추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현재 외국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거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적으로도 거래의 포착이 불가능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제품의 전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입장이며,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많은 개도국들은 국내 업계의 낮은 경쟁력으로 무관세가 선진국 제품의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품의 주문은 인터넷으로 하고 재화를 배달 받는 오프라인 거래는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변동이 없으나, 유형의 재화에 대하여 오프라인 거래까지 무관세를 주장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선행 연구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OECD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선진 각국에서 전체 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과세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OECD의 전자상거래관련거래 형태별, 과세분야별로 기존의 상거래에 비해 전자상거래만이 갖는 거래의 익명성, 주소지의 불확실성 등과 전자서명 등이 갖는 법적 효력 등에 대하여만 일부 분야만이 논의(주로 Tax Point)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조세연구원의 김유찬·홍범교(1998)⁴⁾의 정책보고서 등 정도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의 과세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Owens J.⁵⁾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세계 및 세정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세제에 있어서 공급장소의 개념,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개념, 소득의 특성 규정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과세방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간편성, 명확성, 효율성, 경제적 왜곡의 회피, 유연성과 탄력성, 인터넷 과세베이스 배분의 공정성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영현⁶⁾은 전자상거래의 높은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과 과세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정책과세로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을 무관세 지대로 하자는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과세관청의 기초구조 및 세법적용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넷째, 상업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에 대한 거래기록 보존 및 신고 의무를 적절히 설계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청에 조세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대책방안'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김유찬, 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8.

5) Owens J., "Taxation in Cyberspace",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한국조세연구원, 1997.

6)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한국조세연구원, 1997.

그러나 정영현의 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전자상거래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주된 관점은 과세점(Tax point)에 그 주된 관점을 두고서 논의를 전개하였던 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분야별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적인 특성과 연계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Ⅲ.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상 쟁점

전자상거래에서는 종래의 전통적인 상거래의 시간적·공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상공간에서 만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쟁점은 조세행정상의 쟁점과 실정세법상의 쟁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조세행정상의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기존 조세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고, 실정세법상의 쟁점은 구체적인 조세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세의 핵심인 부가가치세와 국제적 사업활동과 관련한 소득세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제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권관으로 과세권 행상의 곤란이 초래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되는 웹(World Wide Web : WWW)⁸⁾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다. 웹사이트나 인터넷 주소의 소유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등으로 과세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세무행정상 비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국제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관할권의 영향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할 수 있다. 넷째, 조세피난처(Tax-haven)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제적 탈세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 기업들이 현지에 특정한 거점을 갖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과세당국이 확인 불가능한 경영활동을 수행하

7) 김유찬·이성봉, "전자상거래와 조세", 한국전산원, 1997.

8) 웹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의라 여겨 이에 참고한다. 「World Wide Web이란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및 비상업적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의 총체적 별명으로서 곧 웹사이트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 HTML)로 구성되어진 텍스트 문서·그래픽·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적합한 소프트웨어 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의해 접속될 수 있다.」 Tomas J. Smedinghoff, Online Law,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1996, p.522.

면서 자유롭게 소득을 이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환경에서의 과세문제는 각 국가간의 이권이 있는 부분이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단지 온라인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고 물리적인 운송이 필요한 유형의 재화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과세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국가간 거래에 대한 관세, 소득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쟁점이다.

한편 OECD는 소득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원칙에 합의를 하였으며,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공급과 관련한 사업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관련기업은 자산의 라우팅(Routing)을 담당하는 호스트 서버의 위치를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OECD 합의서는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OECD의 합의는 전자상거래 과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과세장소에 의한 조세쟁점

(1) 생산지국과 소비지국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쟁점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Shifting)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소비장소가 거의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사고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소비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상의 유통에서 원칙은 소비지국이나 계약에 의하거나 조약에 의하거나 아니면 이중과세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WTO에 가입이 되지 않은 후진국과의 상거래시 과세점의 포착이 어렵게되어 기존의 상거래와의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유통과 물류가 가능한 유형(Visible)의 재화는 그렇게 과세포착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형(Invincible)의 재화에는 과세포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행 같이 무과세로 상거래가 유지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OECD에서 주장하는 것같이 모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재화인 과세대상 이전에도 과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⁹⁾

9) 파월이나 다운로드의 무형의 재화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한 과종(나무와 열매)에서 분리되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공급장소의 문제는 디지털화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들이 어느 곳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것이다. 기존 조세원칙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급장소의 개념을 공급자의 사업장 혹은 고정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혹은 고정사업장의 공급장소에 속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비되는 나라에서 아무런 고정설비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공급지 및 소비지 중심의 조세개념은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관할권을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국제거래대상의 상무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국경세 수정(border tax adjustments)'라고 한다.

(2) 소득과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쟁점

전자상거래로부터 사업자가 얻은 소득의 발생장소는 어디인가? 즉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기존 조세원칙에서는 과세관청이 소득의 원천지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과세관할권의 문제와 연관된다. 과세관할권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원천지 국과세와 거주지국과세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물리적인 연계라는 특징이 있지만, 물리적인 의미가 퇴색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진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원칙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거주국에는 무제한적으로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원천지국에서 원칙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 간의 소득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거주지국과 세 원칙을 수용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과세관할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의 여건 및 개념문제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설치된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확인할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개념정의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과세관할권에 위치한 상호 연결된 서버들이 통신에 부하량에 따라 전자신호를 자동적으로 서버들에 접속시키게 되면 어느 서버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소득귀속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 웹서버의 지리적 소재지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효력과 같이 인식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대한 조세쟁점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대상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는 디지털화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거래대상으로 하다는 점에서 이들 거래대상의 특징상 기존의 상거래에서 가정하는 운송방식이 아니라 전송(Download)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증빙도 확보하기 어려우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인하거나 고정사업장소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세상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 등과 같이 무형자산 혹은 서비스로 취급할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따라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다르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거래대상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하나의 거래대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복사본을 사용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거주지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로얄티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지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물품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소득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관세에 대한 조세쟁점

미국에서는 1997년 7월 1일에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의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추가적인 내국세의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WTO(1997)에서는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는 특히 디지털화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거래의 대표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음반(레코드, CD), 비디오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란 이에겐 조세의

중립성과 탈루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초기단계에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관세화는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선진국인 미국 등의 강한 주장은 세계경제의 지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선진국과 후발국간¹⁰⁾의 이해관계의 상충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의 무관세화는 잠정적으로 합의된 상황이므로 후발국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무관세화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서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 혹은 음반, 비디오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가 적용된다면, 조세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IV.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상 방안

1. 과세장소에 대한 방안

(1) 소비과세에서 고정사업장

기존상거래에서는 용역공급장소와 용역소비장소를 사실상 일치한다는 개념에서 공급자의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용역공급장소와 용역소비장소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르는 경우에도 용역공급장소와 용역소비장소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과세개념은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자상거래에서 웹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공급장소의 개념을 확대하여 공급장소가 공급자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소재지로 보는 개념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웹서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시 서버의 고정사업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리납부제도와 납세관린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10) ICC, "The revision of the UN Model Tax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related issues", Commission on Taxation, 24 November, 1995. Submitted to the UN Ad Hoc Group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meeting on 11-15 December 1995, Geneva), <http://iccwbo.org/home/menue-taxation.asp>

(2) 소득과세에서 고정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소재지에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거나, 웹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¹⁾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웹서버에 대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등에 배해 원천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웹서버를 고정사업장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와 연계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방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리납부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과세원칙과 비교하여 같은 맥락에서의 소비지국 과세원칙 기반을 일단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¹²⁾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자세히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동일한 재화를 재화 혹은 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디지털화된 경우에는 하나의 재화 혹은 용역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형태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조세회피의 여지를 안겨줄 수 있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범위를 특정 업종별로 구분함으로써 과세장소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용역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무형(In-visible)의 재화에는 과세포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행 같이 무과세로 상거래가 유지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OECD에서 주장하는 것같이 모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재화인 과세대상 이전에도 과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즉 영상, 음성, 문자, 반도체 칩, 파일 기타 다운로드한 무형의 재화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한 과종(나무와 열매)에서 분리되어 다른 부가가

1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부가가치세 법상 비거주자의 사업장은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을 준용하며 소득세 측면의 논의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치를 창출할 경우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강행법적인 법적 효력을 적용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리납부제도¹³⁾를 이미 도입하여 외국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과세사업자¹⁴⁾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자의 주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현행 제도하에서 세수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리납부제도를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납세순응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콜백서비스에 대한 EU의 조치처럼 외국의 사업자를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납세관리인제도¹⁵⁾를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외국사업자에게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다.

앞으로 도입될 전자상거래에 따른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과정에 과세당국이 개입하여 외국으로 이전되는 소득의 내용별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공급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선납하도록 하는 방안¹⁶⁾을 통해 세원을 거래 발생시 부과징수하여 조세행정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조기에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탄력적인 해석과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3. 관세에 대한 방안

우리나라의 관세법 의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⁷⁾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선언에 합의한 우리나라로서는 무형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상거래와의 과세차별이 발생하며 영화, 음반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있어서 전송속도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14) 종전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아 세수의 실익이 없어 '94년부터 의무를 면제하였다.

15) 부가가치세법 제33조.

16) OECD, (1997), “Proposals and Options for Indirect Tax Application to Electronic Commerce Related Supplies”, DAF/CF/CT(97)20, 1997

17) 관세법 제3조, 제9조, 제9조의3 1항.

디지털화된 상품에 대하여 상품별로 구분해 보면 소프트웨어, 전자책의 경우 비과세이나, 비디오, 영화필름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어 기존상거래에서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를 전자상거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세부과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므로 중립성의 원칙이 유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따라 기존 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통하는 경우 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비교적 전자상거래 시장에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인터넷을 무관세시대로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WTO에 정식으로 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의 무관세화는 앞으로 WTO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터넷라운드가 시작되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무관세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무관세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 각료회의에서의 무관세선언은 현재 상황의 현상유지를 의미하지만 새로운 과세기술이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만, 인터넷주문(On-line)이후에 온라인 상 재화의 배달은 물류 이동에 따른 과세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관세 이외에는 별다른 정책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주문이후에 온라인 상 재화의 배달이 아닌 오프라인(Off-line)상 배달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자상거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한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난관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 핵심적인 문제는 전자기술적인 문제와 조세상의 문제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의 조세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상 쟁점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세법상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쟁점 및 조세정책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첫째, 전자상거래 특성상 웹사이트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 서버의 고정사업장 확보함으로써 가능함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리납부제도와 납세관리인제도를 보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비스의 수입의 경우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과세소득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형(Invisible)의 재화에는 과세포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행 같이 무과세로 상거래가 유지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OECD에서 주장하는 것같이 모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재화인 과세대상 이전에도 과세를 부과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따라 기존 상거래를 통하는 경우와 전자상거래를 통하는 경우엔 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인터넷주문(On-line)이후에 온라인 상 재화의 배달은 물류 이동에 따른 과세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관세 이외에는 별다른 정책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주문이후에 온라인 상 재화의 배달이 아닌 오프라인(Off-line)상 배달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및 관세의 과세에 집중되어 조세행정상 문제와 국제조세상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 과세의 중요한 수단인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둘째, 국내기업과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사용현황과 실물 경제의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 및 방안을 제시하는 실증연구가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연구방향은 위의 한계점에서 언급한 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국제적 전자상거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OECD 논의 동향과 과제」, 1998. 9.
김도형,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 동향”,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前국제조세과장.
김영린,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9. 2.
김유찬외,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8.
김유찬·이성봉,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박희주, “인터넷 이용상의 사법적 문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12.
- 서희열, “국제전자상거래시대와 국제조세정책방향”, 국세, 1998. 2.
- 손진화 역,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 송광조, “미국의 전자상거래 과세 논의 동향”, 주미한국대사관 세무협력관.
- 윤창인,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
- 이성봉,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1998. 12.
-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1998. 4.
- 한국전산원,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1998. 12.
- Department of the Treasury,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6.
- Minister of National Office, Tax and the Internet, 1997.
- Owens J., “Taxation in Cyberspace”, 개원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한국조세연구회, 1997.
- Ravi Kalakota & Andrew B. Whinston, “Reading in Electronic Commerce”, Addison-wesley, 1997.
- Revenue Canada, 「Electronic Commerce and Canada’s Tax administration」, <http://www.rc.gc.ca>
- OECD, Electronic Commerce: The Challenges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1997.
- OECD,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1997.
-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1998.
- OECD, 「Commerce and Indirect Tax, the Way Forward」, DAFFE/CFA/CT, 1998.
- OECD, 「Electronic Commerce: Progress Report by the Consumption Tax Project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Work to Date and Proposals for Further Study」, DAFF/CFA/CT, 1998.
- U.S. Government.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July 1. 1997.
-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1999.
- <http://iccwbo.org/home/menue-taxation.asp>

ABSTRACT

A Study on the Tax Policy of Electronic Commerce

Lee, Joung-Gee · Han, Young-Hee

At present export and import of goods & service on the online is rapidly growing in importance, not only for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for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a tendency,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o generally classify such income tax, added value, to generally fix the place and the time of the transaction on the online.

Due to the variety of Electronic Commerce arrangements being entered into today, the tax treatment of invisible-goods & service methods must be made on the basis of all facts and circumstances of a particular transaction, specifically including the terms of the relevant contract between the parties.